

의안번호	2205183
의 퇴 인	김도읍의원
회 답 일	2024. 12. 16.
추 계 번호	24D47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면과 후면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1,836억 9,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710억 1,700만원(연평균 742억 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연평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면·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183,694	187,323	—	—	—	371,017	74,203

- 주: 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면·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안 제12조 및 제12조의2)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전면·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단가는 크게 차이가 없어 현행법에 따라서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재정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
 3.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존에 설치된 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전면·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이고, 개정안의 부칙에서 시행 후 2년 이내에 교체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에만 발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및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시·도경찰청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시·도경찰청장 등은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및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전면·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
 -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전면·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단가는 크게 차이가 없어 현행법에 따라서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재정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상승률¹⁾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개정안의 부칙에서 시행 후 2년 이내에 기존에 설치된 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교체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에만 발생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5%	2.2%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전면·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본 추계에서는 전면·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수량에 1개당 설치 비용을 곱하여 산출
 - (수량) 2026년 6,533개, 2027년 6,532개로 추정
 -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1월말 기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총 13,065개²⁾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6년부터 2년 이내에 전면·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교체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균등하게 나누어 2026년 6,533개, 2027년 6,532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
 - (1개당 설치 비용) 2026년 2,812만원, 2026년 2,868만원으로 추정
 - 경찰청의 2024년 예산 편성 기준 1대당 2,70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기존에 설치 및 유지관리대상이었던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교체 후의 유지관리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없음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면과 후면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836억 9,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710억 1,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량(a, 개)	6,533	6,532	-	-	-	-
1개당 설치 비용(b, 만원)	2,812	2,868	-	-	-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183,694	187,323	-	-	-	371,0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경찰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전면·후면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많지 않아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함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